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 번호 : 20250520
최초 등록일 : 2025-05-09
최종 등록일 : 2025-05-09

[천통]

정 보 공 개 서

(주)편앤아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주) 편 앤 아 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대표전화번호 : 02-579-7717

가맹사업부전화번호 : 02-579-7717

대표팩스번호 : 02-576-771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 점포개발팀 전화번호 02-579-77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3] 메뉴 및 가격

[별첨4] 가맹본부 재무제표

[별첨5]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6]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편앤아이	천통 외 5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11.27	2008.12.01	김철윤	02)579-7717	02)576-7716
	법인등록번호	121111-0180116	사업자등록번호	130-86-3874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철윤	천통 외 5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철윤	02)579-7717	02)576-771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사	김철윤/ (주)해리코리아	없음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철윤	02)529-4355	02)529-436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해리코리아	편비어킹	2021.01.01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김철윤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해리코리아	돼지대첩	2021.01.01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김철윤

※ 당사는 당사의 계열사인 (주)해리코리아의 편비어킹 가맹사업과 돼지대첩 가맹사업을 2021년 1월 1일자로 양도받았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천통]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천통	
상 호	천통 00점	
상표(서비스표)		

5. 바로 전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4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3,381,264	2,282,306	1,098,958	11,758,541	989,104	1,018,631
2023년	3,495,990	986,751	2,509,238	13,539,897	1,300,618	1,410,280
2024년	4,191,856	1,769,527	2,422,328	12,287,816	-9,645	-86,909

※ 당사는 2021년 1월 1일자로 당사의 계열사인 (주)해리코리아의 편비어킹 가맹사업과 돼지대첩 가맹사업을 양도받았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철윤	대표이사	2008년 12월 ~ 현재	(주)편앤아이 대표이사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4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천통]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편앤아이	가맹사업 경영	2010년 3월~ 2017년 3월	편비어킹(등록번호 : 20100100603) 치킨호프 전문점
			2017년 3월~ 2020년 3월 13일	트래블앤쿡(등록번호:20150481) 퓨전짬뽕전문점[등록취소]
			2017년 5월~ 2020년 3월 13일	해피락25(등록번호:20171187) 칠성급 푸드코트 편의점[등록취소]
			2021년 1월~현재	편비어킹(등록번호 : 20100100603) 맥주,소주 주류 전문점
			2021년 1월~현재	돼지대첩(등록번호:20190602) 숙성삼겹 전문점
			2021년 7월~현재	죽술랭(등록번호:20211170) 죽발,보쌈,닭발 전문점
			가맹사업 개시 예정	빨강다람쥐(등록번호:20214866) 떡볶이, 피자, 강정 전문점
			가맹사업 개시 예정	스시앤락(등록번호:20214867) 초밥, 회 전문점
특수 관계인	(주)해리코리아/ 김철윤	가맹사업 경영	2001년 2월~ 2017년 10월 5일	비어캐빈(등록번호:20080100295) 맥주전문점[등록취소]
			2003년 4월~ 2016년 4월 29일	브링웰피자(등록번호:20080100297) 테이크아웃 피자전문점[등록취소]
			2007년 9월~ 2016년 4월 29일	퓨처월드(등록번호:20080100296) 럭셔리주류전문점[등록취소]
			2003년 4월~ 2020년 3월 13일	유객주(등록번호:20080100294) 퓨전요리주점[등록취소]
			2012년 1월~ 2020년 3월 13일	카페파스타(등록번호:20120100201) 피자파스타전문점[등록취소]
			2015년 6월~ 2020년 4월 1일	돈삼육지 맛삼흥그릴(등록번호:20132074) 참숯불구이 고기전문점[등록취소]
			2015년 6월~ 2017년 3월	트래블앤쿡(등록번호:20150481) 퓨전짬뽕전문점[등록취소]
			2017년 2월~ 2018년 12월 26일	피아이디(등록번호:20170208) 스타일리쉬 펍 감성공간[등록취소]

			2017년 3월~ 2020년 12월	편비어킹(등록번호:20100100603) 치킨호프 전문점
			2019년 6월~ 2020년 12월	돼지대첩(등록번호:20190602) 숙성삼겹 전문점

- ※ 당사는 상기 가맹사업 중 브링웰피자와 퓨처월드는 2016년 4월 29일, 비어캐빈은 2017년 10월 5일, 피아이드는 2018년 12월 26일, 유객주, 카페파스타, 트래블앤쿡, 해피락25는 2020년 3월 13일, 돈삼육지 맛삼흥그릴은 2020년 4월 1일 이후 더 이상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2021년 1월 1일자로 당사의 계열사인 (주)해리코리아의 돼지대첩 가맹사업과 편비어킹 가맹사업을 양도받았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표 (제43류)	출원 예정		(주) 편앤아이	

- ※ 당사는 당사의 계열사 (주)해리코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천통] 가맹사업 현황

1. [천통]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2. [천통] 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성명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편앤아이	천통	김철윤	가맹사업 준비 중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3. [천통] 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천통	한식	육류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천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구분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천통] 가맹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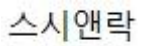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천통]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천통]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 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편앤아이		20100100603	맥주,소주 주류 전문점	349/1	339/2	326/1
			20190602	480시간 숙성삼겹 고기전문점	12/1	11/1	10/1
			20211170	기타외식 (족발,보쌈, 닭발 등)	6/1	4/1	5/1
			20214866	분식 (떡볶이, 피자, 강정 등)	0/0	0/0	0/1
			20214867	일식 (초밥, 회 등)	0/0	0/0	0/0

		 2020년 3월 13일 가맹사업 종료	20150481	퓨전짬뽕 전문점	0/0	0/0	0/0
		 2020년 3월 13일 가맹사업 종료	20171187	칠성급 푸드코트 편의점	0/0	0/0	0/0
특수관계인 (계열사)	(주)해리코리아	 2020년 3월 13일 가맹사업 종료	20080100294	퓨전요리 주점	0/0	0/0	0/0
		 2020년 3월 13일 가맹사업 종료	20120100201	피자파스타 전문점	0/0	0/0	0/0
		 2020년 4월 1일 가맹사업 종료	20132074	참숯불구이 고기전문점	0/0	0/0	0/0
		 2018년 12월 26일 가맹사업 종료	20170208	스타일리쉬 펍 감성공간	0/0	0/0	0/0
		 2017년 10월 5일 가맹사업 종료	20080100295	맥주전문점	0/0	0/0	0/0

※ 당사는 상기 가맹사업 중 비어캐빈은 2017년 10월 5일, 피아이드는 2018년 12월 26일, 유객주, 카페 파스타, 트래블앤쿡, 해피락25는 2020년 3월 13일, 돈삼육지 맛삼홈그릴은 2020년 4월 1일 이후 더 이상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1년 1월 1일자로 당사의 계열사인 (주)해리코리아로부터 돼지대첩 가맹사업과 편비어킹 가맹 사업을 양수받았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상한)	연간 평균(하한)	

		매출액	3.3㎡당 매출액	매출액	3.3㎡당 매출액	매출액	3.3㎡당 매출액	
전체	-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 POS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에 영업 활동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활용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시공 매뉴얼 준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천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천통]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천통]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통]에 관련된 광고판촉비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4]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광고선전비	온/오프라인	2024.01 ~ 2024.12	-	-	-	
판매촉진비	오프라인		-	-	-	
합 계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서울서초우체국	금융영업실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9	02-3498-8012
NH농협은행 at센터지점	금융영업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02-6300-84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 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금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2번의 가~라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가맹본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 보증보험사 정보

- ① 보험사: SGI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 ②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5, 8층 대각빌딩 (서초동)
- ③ 연락처: 02-3474-0021

2) 보증보험 내역

- ① 보증보험금액: 최초 가맹금
- ② 보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③ 보증보험의 목적: 가맹본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보험금 청구 절차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SGI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필요한 서류: 가맹계약서 사본, 최초 가맹금 납입 증빙서류, 기타 관련 증빙서류
- ③ 보험금 청구는 보험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 절차 및 소요 기간은 SGI서울보증보험의 정책에 따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① 본 보증보험은 가맹본부의 최초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와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천통]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4,300	계약 체결일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영업개시 전 계약해지	<OPEN 전>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노하우 및 인력,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가 등의 미지급이나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총계	15,300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99㎡(3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평(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 계	-	139,420	4,647	평당 금액은 총계/기준평수		
인테리어 (내/외장)	협력업체	77,000	2,567	· 계약금(10%):계약시 · 착수금(40%):착공일 · 중도금(40%) : 준공 10일전 · 잔금(10%) : 준공일	미공사 또는 미설치 경우	가맹점사 업자가 자체 시공시 감리비 부담 ¹⁾
집기 · 비품	(주)편앤아이	45,980	1,533	· 계약금(10%):계약시 · 착수금(40%):착공일 · 중도금(40%) : 준공 10일전 · 잔금(10%) : 준공일		
간판	(주)편앤아이	8,800	293			전면 또는 돌출 점주가 선택
음향공사	(주)편앤아이	2,420	81			PDP2대 포함
초도 상품	(주)편앤아이	1,100	37			
BPS	(주)편앤아이	2,310	77			
테이블 오더	협력업체	277	9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전기증설, 덕트입상, 냉난방기, 철거, 가스, 소방, 각종 인허가 외					

1)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 시 도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5%(VAT별도), 감리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15%(VAT별도)를 부담함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형태, 위치, 성격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자, 피한정후견인자가 아닐 것	가맹점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천통]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시 도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5%(부가세별도), 감리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15%(부가세별도)를 부담함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전국 : 50% 지역 : 100% 단독 : 100%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반환불가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1. 기본 : 점포 실 매출액의 5% (부가세 미포함) 2. 본사 지정업체의 물품 일체 사용 : 점포 실 매출액의 3% (부가세 미포함)	매월 10일	반환불가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은행이자율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불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금으로 반환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 p.38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당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식재관리	식자재 적정수량 체크 및 유통기한 준수여부 체크	수시(방문시)	문의 : 담당SV (02-579-7717)
위생관리	가맹점의 위생상태 관리 점검 및 직원의 위생상태 점검		
기물관리	고객 제공 기물 노후상태, 관리상태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매뉴얼준수	전체프로모션 시행여부, 메뉴판 사용 및接客력 체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계약비(갱신)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재계약비(갱신)	5,500	재계약 체결 시	반환불가	재계약시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
비 고				
당사는 직전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본사의 기여도, 영업실적 및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열티의 금액 조정으로 재계약비(갱신)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10,000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맹비 발생(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부여)
교육비	3,000	양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유지
로열티	1. 기본 : 점포 실 매출액의 5% 2. 본사 지정업체의 물품 일체 사용 : 점포 실 매출액의 3%	양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유지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해지)시까지 성실하게 가맹점 사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의 종료(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거점지역”내에서 천통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계속되도록 가맹본부 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협조를 거절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계약의 종료(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및 기타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 및 외장 간판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점포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영업표지”의 제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 “가맹계약”에 의한 실 사용면적 1㎡당 금 오천원(₩5,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값을 지연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계약 종료(해지)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천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와 같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귀하가 [천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천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천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3]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품목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제한내용>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책임>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안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안)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 메뉴별 권장가격은 [별첨3]과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브랜드

육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천통 / 돼지대첩	-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의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의 기준점(가맹점 전용공간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도보거리 300M를 범위로(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특수상권(복합 쇼핑몰,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경우와 분리상권(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이거나 전철역 철도의 양쪽 상권)의 경우에는 별개의 상권으로 설정)	가맹계약서 제5조 참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천통'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천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	-	-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최초 가맹계약 기간 :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 :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제6조 제2항)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3조 1항
2.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을 불참한 경우	
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준공계 접수 이전에 초도물품을 입고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지급의무(개설정산금, 로열티, 물품구매비 등)를 지체할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판 및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점포 운영을 중단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편비어킹 시스템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비의 지급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내 모든 표식물(POP등)을 가맹본부 승인 없이 부착하는 경우	
2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24. 가맹본부가 송출하는 FBS방송을 점포 내에서 송출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5. 가맹본부가 정한 심화교육, 신메뉴교육(조리동영상 등) 교육 참여, 개발용기 매뉴얼에 맞게 사용, 발주방식(웹사이트 발주 등), 결제(결제일 준수)등을 미준수 하는 경우	
26. 가맹점사업자가 포스에 영업매출을 미입력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매출을 축소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1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협의 또는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는 협의만으로 변경 가능)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는 가맹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상의 귀하의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양수인이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동 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⑤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기간(3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⑥ 제4항의 예외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법률적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사실 확인(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 통해 양수가맹비를 면제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조리실습교육에 사용하는 실비 개념의 교육비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양수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가맹계약상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본건 가맹점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타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⑧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 금삼백삼십만원(₩ 3,300,000) (VAT 포함)을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⑨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정의 교육비 3,300,000원을 부담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천통]과 같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 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식사와 고기,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식당&주점) 및 이와 동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3:00	연중무휴	문의 : 천통SV (02-579-7717)

-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종업원수	직접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4명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점사업자 자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자료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을 진행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천통]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체광고	상품(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 1개월 전 부담금 통지서 발송 → 수령 후 익월 10일까지 납입 → 광고 시행	
	상품(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행사	포스터 등	100%	0%	행사 계획 공고 → 행사시행 → 가맹점의 행사 참여 독려 → 본부에서 경품 및 포스터 전달 → 행사시행	신규 출점 시 첫 회분은 가맹점 100% 부담
	경품, 시식, 이벤트, 판촉비 적립 등	0%	100%	행사 계획 공고 → 행사시행 → 가맹점의 행사 참여 독려 → 행사시행	

- ☞ 포인트 적립 또는 기타 프로모션을 위한 판촉 활동 : 프로모션 판촉행사 진행에 필요한 포인트 적립 시 적립금은 고객이 점포에서 구매하는 해당금액의 3~5% 이내로 합니다.
- ☞ 판촉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판촉비 적립에 따른 제반 운영비용을 부담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및 시행령 13조의5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조에서 실시한 광고 또는 판촉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요구할 경우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을 열람하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 18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 33조 제2항의 8호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본 계약 제30조 12항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당사의 브랜드에 손해를 입힐 시에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각자가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귀하 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와 귀하는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 ④ 귀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허위로 이행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99m² 기준)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상담	문의, 희망지역 접수, 담당자상담	D-47(1일)	없음
사업설명 ·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6~45(1일)	
점포개발/상권분석	희망지역 결정 / 입지지역 분석, 시장조사	D-45~33(13일)	점포임대비용
가맹점 가맹 계약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체결, 계약서 1부 보관	D-31(1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없음
가맹금예치 (가맹금,교육비포함)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 교육비)	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예치금 소요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시공계약체결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정	D-28~30일(3일)	없음
계약금 지급 (인테리어)	계약금 입금(공사금액의 10%) 착수금 입금(공사금액의 40%)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지급 (인테리어)	중도금 입금(공사금액의 40%)	D-26일 (공사개시1일전)	인테리어 중도금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설비) 공사 실시 각종인.허가 취득	D-3~25일	실소요기간
교육실시	점포운영교육 등 실시	D-20~17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병행 진행
개점준비마무리	공사완료 각종소모품 입고 및 개점	D-1~3일(3일)	자체비용소요
잔금지급 (인테리어)	잔금입금(공사금액의 10%)	D-day	잔금 소요
가맹점 오픈(준비)	가맹점 오픈준비 및 영업개시	D-day	없음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1)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합니다.
- 2)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단,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천통]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 비용은 협의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간판교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오픈일로부터 3일간	한도 1,000	

판촉장려금	매월 가맹점 매입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기간	직전 2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0~20,000 : 매입금액의 2% 20,000 초과 ~ 30,000 : 매입금액의 3% 30,000 초과시 : 매입금액의 5%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으로 지원
판촉지원	매월 전체 가맹점의 제품 주문량의 1~5%를 가맹점의 판촉물로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가맹점에 필요한 판매용집기를 계약기간 동안 부상대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반품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 날 등)시 출시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시즌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가맹점 매입금액의 8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마일리지	구매회원에 대한 1~5% 마일리지 적립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가맹점 판촉마일리지 지급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없음 (전 가맹점 해당)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 출시 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총괄 기획실 (02-579-7717)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천통]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주)편앤아이	최대 5천만원	주류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KEB하나은행	최대 5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OO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573-2081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설정된 적정매출의 80% 미만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메뉴조리/BPS사용/기타교육	실습교육 / 이론강의	가맹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정기교육	신메뉴조리/기타사항	실습교육 / 이론강의	별도지정	필수교육
특별교육	메뉴조리/기타사항	실습교육 / 이론강의	별도지정	본사 필요 판단시 가맹점주 요청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신규교육	16일 (120시간)	3,300 (VAT포함)	가맹점주 포함 2인	오픈 지연 오픈점 근무불가
정기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5:5 부담)	가맹점주, 종업원	점포평가 반영 재계약시 적용
특별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가맹점주, 종업원	점포평가 반영 재계약시 적용

※ 개점 전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통 교육일정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99m²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메뉴 및 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본부 재무제표(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본부 재무제표(2023~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 편앤아이
	성명(대표자)	김 철 윤
	주소(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7 2층(양재동, 테팩스빌딩) (전화: 02-579-7717)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예비점주)의 계좌		
가맹금예치 계좌 (점주가 입금할 계좌)		014167-01-024975 (우체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6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영점 및 가맹점 포함)

	가맹점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본인은 천통 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를 전자적 문서를 통해 본인의 이메일로 제공받은 것을 동의하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전자적 문서를 수신하지 못하였거나 내용확인이 불가할 경우 즉시 재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과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 작성한 날 : 년 월 일

3. 주요 목차 :

- | | |
|------------------------------|-----------------|
|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③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 ④ 가맹사업자의 부담 |
|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⑥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 ⑦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

가 맹 본 부 : (인)	수령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절취선)-----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본인은 천통 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를 전자적 문서를 통해 본인의 이메일로 제공받은 것을 동의하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전자적 문서를 수신하지 못하였거나 내용확인이 불가할 경우 즉시 재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과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 작성한 날 : 년 월 일

3. 주요 목차 :

- | | |
|------------------------------|-----------------|
|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③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 ④ 가맹사업자의 부담 |
|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⑥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 ⑦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

가 맹 본 부 : (인)	수령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증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증

가 맹 본 부 :	(인)	수령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